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06 -제58호
----------	------------

제출연월일 2006. 10. 1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산물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안 제3조)

- 대방동 681-9번지,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1,619.4m²

나. 특산물판매장의 기능(안 제4조)

- 특산물의 전시·판매
- 농·어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토속음식 판매
-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일상생활용품 판매
-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한 안내
- 기타 판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영업

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연간 사용료 요율을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06. 8.18 ~ 9. 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제109회 - 총무위 부록)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산물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해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치 및 규모) 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위 치	규모 및 구조	면 적	연면적
사천시 대방동 681-9번지	지상 1,2,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1,384㎡	1,619.4㎡

제4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산물의 전시·판매
2. 농·어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토속음식 판매
3.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일상생활용품 판매
4.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한 안내
5. 기타 판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영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사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도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2. 위탁받은 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 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①연간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외에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납기·납부방법 등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험가입) ①수탁자는 판매장(건물만 해당) 평정가격 이상으로 사천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판매장에 대하여 시장이 이미 손해보험에 가입 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보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비)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

(제109회 - 총무위 부록)

만, 협약서에서 체결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운영규정) ①수탁자는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135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9회 - 총무위 부록)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6. 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109회 - 총무위 부록)

1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